

수입자동차 시험성적서 인정 내용(제4조관련)

(인정:○,미인정:×)

시 험 항 목		미 국 (자체 시험성적서)	E U (공인기관 시험성적서)	해당안전기준
1. 충돌시 승객보호	정면	◦(FMVSS 208)	◦(ECE 94, 137)	제102조, 제102조의3
	측면	◦(FMVSS 214)	◦(ECE 95, 135)	제102조, 제102조의4
2. 충돌시 조향핸들 후방이동		◦(FMVSS 204)	◦(ECE 12 또는 EEC 74/297)	제89조제1항제2호
3. 충돌시 연료누출 방지		◦(FMVSS 301)	×	제91조, 제91조의4
4. 충돌시 앞면창유리 고정성		◦(FMVSS 212)	×	제105호제2항제1호 및 제2호
5. 충돌시 앞면창유리 침입성		◦(FMVSS 219)	×	제105호제2항제3호
6. 좌석 및 그 잠금장치		◦(FMVSS 207)	◦(ECE 17 또는 EEC 74/408)	제97조
7. 머리지지대 강도		◦(FMVSS 202)	◦(ECE 17,25 또는 EEC 78/932)	제99조
8. 문열림방지장치		◦(FMVSS 206)	◦ ⁽¹⁾ (ECE 11 또는 EEC 70/387)	제104조제2항
9. 계기판넬 충격흡수		◦(FMVSS 201)	◦(ECE 21 또는 EEC 74/60)	제88조
10. 좌석 등받이 충격흡수		◦(FMVSS 201)	◦(ECE 21 또는 EEC 74/60)	제98조
11. 팔걸이 충격흡수		◦(FMVSS 201)	◦(ECE 21 또는 EEC 74/60)	제100조
12. 햇빛가리개 충격흡수		◦(FMVSS 201)	◦(ECE 21 또는 EEC 74/60)	제101조
13. 범퍼 충격흡수		◦(CFR49,PART581)	×	제93조
14. 실내후사경 충격흡수		◦(FMVSS 111)	◦(ECE 46 또는 EEC 71/127)	⁽⁶⁾ 제50조제1항제1호
15. 조향장치 충격흡수		◦(FMVSS 203)	◦(ECE 12 또는 EEC 74/297)	제89조제1항제1호
16. 옆문 강도		◦(FMVSS 214)	×	제104조제1항
17. 천정 강도		◦(FMVSS 216)	×	제92조
18. 좌석안전띠 부착장치		◦(FMVSS 210)	×	제103조제3항
19. 견인장치		×	◦(EEC 1005/2010)	제20조제1항
20. 후부안전판 강도		×	◦(ECE 58 또는 EEC 70/221)	제96조
21. 등화장치	설치기준	◦(FMVSS 108)	◦(ECE 48 또는 EEC 76/756)	각해당조항
	전조등	◦(FMVSS 108)	◦(ECE 1, 2, 5, 8, 20, 31, 98, 112, 123)	제38조
	앞면안개등	◦(FMVSS 108)	◦(ECE 19)	제38조의2제1항
	후퇴등	◦(FMVSS 108)	◦(ECE 23)	제39조
	차폭등	◦(FMVSS 108)	◦(ECE 7)	제40조
	번호등	◦(FMVSS 108)	◦ ⁽²⁾ (ECE 4)	제41조

시 험 항 목		미 국 (자체 시험성적서)	E U (공인기관 시험성적서)	해당안전기준
21. 등화장치	후미등	◦(FMVSS 108)	◦(ECE 7)	제42조
	제동등	◦(FMVSS 108)	◦(ECE 7)	제43조제1항
	보조제동등	◦(FMVSS 108)	◦(ECE 7)	제43조제2항, 제3항
	방향지시등	◦ ⁽³⁾ (FMVSS 108)	◦(ECE 6)	제44조
	보조방향지시등	◦(FMVSS 108)	◦(ECE 6)	제44조
	뒷면안개등	×	◦(ECE 38)	제38조의2제2항
	후부반사기 또는 후부반사지(판)	×	×	제49조
	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표시등	◦(FMVSS 108)	×	제48조제4항
22. 운전자의 시계범위		◦(FMVSS 111)	◦(ECE 46, 125)	제50조제1항, 제94조
23. 원동기출력		◦(ISO 1585)	◦(ECE 85)	제106조
24. 시계확보장치	창뒤편이	◦(FMVSS 104)	◦(EU 1008/2010)	제51조제2항, 제109조제1항제1호
	서리제거장치	◦(FMVSS 103)	◦(EU 672/2010)	제109조제1항제2호
	안개제거장치	◦(FMVSS 103)	◦(EU 672/2010)	제109조제1항제3호
	세정액분사장치	◦(FMVSS 104)	◦(EU 1008/2010)	제109조제1항제4호
25. 가속제어장치 복귀능력		◦(FMVSS 124)	×	제87조
26. 소음방지장치		×	×	제35조
27. 승용자동차의 제동능력		◦(FMVSS 135)	◦(ECE 13H)	제15조, 제90조제1호
28. 승합자동차·화물자동차(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) 및 특수자동차의 제동능력		×	◦ ⁽⁵⁾ (ECE 13 또는 EEC 71/320)	제15조, 제90조제2호

시 험 항 목	미 국 (자체 시험성적서)	E U (공인기관 시험성적서)	해당안전기준
29. 피견인자동차의 제동 능력	×	°(ECE 13 또는 EEC 71/320)	제15조, 제90조제3호
30. 바퀴잠김방지식 주제 동장치를 설치한 자동차(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)의 제동능력	×	°(ECE 13 및 ECE 13H)	제15조, 제90조제4호
31. 바퀴잠김방지식 주제 동장치를 설치한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능력	×	°(ECE 13 또는 EEC 71/320)	제15조, 제90조제5호
32. 연결자동차의 선회시 제동능력	×	×	제90조제6호
33. 타이어파열	°(FMVSS 110)	×	제88조의2
34. 조향성능	×	°(ECE 79 또는 EEC 70/311)	제14조, 제89조제2항
35. 최고속도제한장치	×	°(ECE 89 또는 EEC 92/24)	제110조의2
36. 속도계	×	°(ECE 39 또는 EEC 75/443)	제110조제2항
37. 차실내장재 연소성	°(FMVSS 302)	×	제95조
38. 내부격실문 열림방지	°(FMVSS 201)	×	제108조
39.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	×	×	제27조의2, 제103조의2
40. 전자파 적합성	×	°(ECE 10)	제107조
41. 경음기	×	×	제53조

- 주) 1. Sliding door인 경우 ECE11만 해당됨
2. 시험방법은 국내기준에 적합할 것
3. 미국의 경우 방향지시등 색상은 황색만 가능함
4. 미국의 FMVSS번호등과 EU의 EEC 및 ECE번호는 당해 국가의 안전기준에 의하여 시험한 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항목임
5. 차량 총중량 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안전기준 별표7의2 제11호 기준에 적합할 것
6. 안전기준 별표 5의7 제2호에 따른 실내후사장치 충격시험만 적용